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기금의 설치, 조성, 존속기한(안 제2조부터 제4조)
- 기금의 용도,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8조)
-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
 용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임

2) 주요 내용

- 기금의 설치, 조성, 존속기한(안 제2조부터 제4조)
 - 기금의 설치(안 제2조)
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함
 - 기금의 조성(안 제3조)
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
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용자된 기금 621,603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
 등으로 5년간 총 8억 8천 9백만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
 - 존속기한(안 제4조) : 2028년 12월 31일까지

※ 「연도별 재원조달 비용 추계」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세입	기 금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	소계(a)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세출	기 금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	소계(b)	829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889,000
□총 비용(a-b)		-	-	-	-	-	-

- ▶ 보린주택 현황 : 1~6호점, 97세대
- ▶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용자 현황 : 68세대 621,603천원(23.07.25. 기준)

▶ 신규 용자 신청 : 207,200천원(20세대 × 평균 입주보증금의 90% 10,360천원)

○ 기금의 용도,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(안 제5조부터 제7조)

- 기금 용도(안 제5조) : 공공임대주택(금천구 “보린주택”) 입주 예정자의
입주보증금 용자

-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: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

○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: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
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
기금 운영관리 조례」는 폐지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이 장기간 운용 실적이
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보린주택사업의 지속 추진을
위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함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주거기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
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용자 기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향후 5년간 기금 조성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세입 등의
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